상주시 공고 제2019-774호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상 주 시 장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벌면 주민들의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 「사벌면」의 명칭을 「사벌국면」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 내용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벌면→사벌국면)

별표 1의 읍면동란 중 “사벌”을 “사벌국”으로 한다.

별표 3의 읍면동란 중 “사벌”을 “사벌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537 - 7160
+ E-mail : rainysun550@korea.kr / FAX : 537-6089
+ 시 홈페이지 : www.sangju.go.kr(입법예고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상주시청 총무과)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